

# 등록금심의위원회(6차)

## 회의록

결 재	담당	주임	처장	총장
	최유나			윤괴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17. 01. 17 (화)
위원정수	8명	재적위원	8명

1. 일시 : 2017년 01월 25일(수) 14:00 ~ 15:10
2. 장소 : 문경대학교 제1강의동 2층 NCS회의실
3. 참석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비고
사무처	위원장	윤괴식	윤괴식	
기획처	위원	고경임		
문경대학교	위원	길민욱	길민욱	
본 대학 재학생	위원	이영호		
본 대학 재학생	위원	안유정		
본 대학 재학생	위원	고민서	고민서	
본 대학 동문	위원	정명희	정명희	
관련전문가	위원	박선신	박선신	

#### 4. 안건

- 가. 2017학년도 문경대학교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심의 의결 건
- 나. 등록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다. 2016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건

라.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의결 건

마.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안) 마련 건

## 5. 회의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재적위원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다.

### 가. 2017학년도 문경대학교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심의 의결 건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우리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을 보면 2013학년도 등록금 1%인하, 2014학년도 등록금 1%인하, 2015 및 2016학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 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최소화 되도록 부족한 학교 재정 운영을 대학 자체 구조개혁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보자는 대학 경영층의 의지에 따라 2017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대하여 동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선신 위원: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년 연속 등록금이 인하 및 동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학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학교가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윤괴식 위원장: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대학으로 자연증가분에 의해서가 아닌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명희 위원: 등록금의 동결로 인한 학교 재정에 대한 부담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괴식 위원장: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수익 구조를 찾던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문경시에서 지원하던 문경대학 육성지원금이 2016년도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통과하여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문경시에서 문경대학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명품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5억씩 6년에 걸쳐 30억을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측에서는 대학 건물 옥상과 운동장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운영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등록금을 동결하여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 그리고 복지향상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윤괴식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생생활관의 침대교체와 강의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고민서 위원: 대학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록금이 동결되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2017학년도 등록금 동결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체 위 원: 없습니다.)

윤괴식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하십니까?

(전 체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6학년도 문경대학교 등록금관련규정에 대한 개정 신청 건

현행		개정안	
제4조 (납부기일)		제4조 (납부기일)	
[표 1]		[표 1]	
연기신청일수	분할납부금액	연기신청일수	분할납부금액<개정2017.01.00>
수업일수 1/4선	등록금액 1/3에 해당하는 금액	등록기간 내	등록금액 1/3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일수 2/4선	등록금액 2/3에 해당하는 금액	등록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금액 2/3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일수 3/4선	등록금액 3/3에 해당하는 금액	등록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금액 3/3에 해당하는 금액

윤피식 위원장: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할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규정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검토하셔서 의견 바랍니다.

길민욱 위원: 연기신청일수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피식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④에 의거하여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수업일수에 의해서가 아닌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기신청일수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위 원 : 관련 자료를 검토 한다.)

윤피식 위원장: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 굳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괴식 위원장: 현행 규정상에 따르면 수업일수 1/4선 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 기간 내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미등록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실제 등록기간에 시행되고 있는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내 해당 등록금액의 1/2를 납부, 나머지 잔액은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납부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 보다 3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 체 위 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윤괴식 위원장: 그럼, 등록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 2016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건**

윤괴식 위원장 : 2016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배부해드린 2016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처 주봉순 주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 체 위 원 : 회의 자료를 검토하다.)

주봉순 주임: 2016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2016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입니다. 최종 추가경정을 하는 목적은 수입예산과 실제 결산상 수입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2016학년도 교비회계 가결산을 바탕으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이월사업을 파악하여 2017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3개 부서 및 6개 학과가 신청하였으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총계는 9,363,077천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216,54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의 주요사항은

종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환과 2017학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월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잔디조성공사, 화장실개선공사, 교직원역량개발프로그램 등으로 이에 대해 총 578,8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체 위 원 : 회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다.)

정명희 위원: 비등록금 감소내역에 교육부(기타지원금) 225,300천원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 국가장학금에 편입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봉순 주임: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시 2015년 결산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을 기타지원금으로 분리하였으나, 최근 교육부 지침을 살펴보면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장학금에 대한 실질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 체 위 원 : 없습니다.)

윤괴식 위원장: 그럼 2016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건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라.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의결 건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에 관하여 기획처 주봉순 주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봉순 주임: 이번 2017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대학 중·단기 발전 계획 비전 달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지원사업과의 예산을 중복하여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단위부서별 전년도 사업 집행 결과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였으며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체 위 원: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주봉순 주임: 2017학년도 본예산은 9,012,702천원으로 전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 대비 350,37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자료에 나온 의견수렴과정 및 절차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확정된 2017학년도 자금수입예산에 맞추어 부서 및 학과 사업계획예산을 기획처에서 1차로 검토하였으며, 2차로 사업담당자와 해당 부서 및 학과 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민서 위원: 2017학년도에는 교내장학금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편과는 다소 상이하게 소득분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 국가장학금에 대해 혜택을 비교적 낮게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길민욱 위원: 장학금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봉순 주임: 장학금관련 예산은 등록금수입의 15%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결되는 등록금 금액과 대비하여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장학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 체 위 원: 없습니다.)

윤괴식 위원장: 2017학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건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안) 마련 건**

윤괴식 위원장: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안)에 대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록금회계 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 등록금회계 차기이월자금과 금년도 본예산 등록금회계 전기이월자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만약, 본예산 편성 시 전기이월자금을 수입예산에 과소 계상하게 될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처리원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교육비와 학생복지 및 교육여건부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민서 위원: 결산 시 차기이월자금과 본예산에 편성된 전기이월자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괴식 위원장: 결산 전,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사업예산을 가결산하여 차기이월자금을 파악한 후 전기이월자금을 수입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정명희 위원: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교육비와 학생복지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에 처리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괴식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 체 위 원: 없습니다.)

윤괴식 위원장: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안)에 대한 건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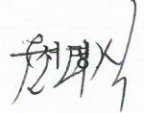
이것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7년 0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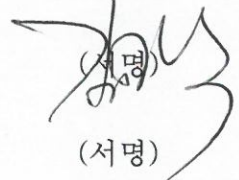
위원장 윤괴식



(서명)

위 원 고경임

위 원 길민욱



(서명)

위 원 이영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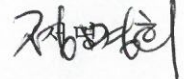
위 원 안유정

(서명)

위 원 고민서



위 원 정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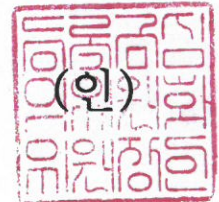


위 원 박선신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문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문경대학교총장 귀하